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교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이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총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 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익신고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처 감사팀으로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 내용
 3.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 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사건 등의 조사 및 처리) ①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송부할 수 있다.

③ 본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는 관할 조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결과는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공익신고 사건의 종결) ①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종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교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총장은 구성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 총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내부신고자보호관련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신 고 서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직위		연락처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침해행위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p>[]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p> <p>[]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p>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p>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